



제 437 회 국 회 (임 시 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역균형발전 요인을 낙찰자 결정 기준에 포함〉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8370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지역균형발전 요인을 낙찰자 결정 기준에 포함(안 제10조제2항제3호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임종득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4. 16.

다. 회 부 일 : 2026. 4.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및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등을 낙찰자 결정 기준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기여도와 같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익적 요소를 낙찰자 선정 기준으로 추가하여 국가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이 포함된 국가산업단지 입주 여부 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계약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정책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지역균형발전 요인을 낙찰자 결정 기준에 포함(안 제10조제2항 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함 -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u><신설></u> - 그 밖에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함 (안 제10조제2항제3호 신설)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u>인구감소지역 소재 산업단지 입주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의 지역균형발전에 가장 효과적인 내용으로 입찰한 자</u> - (현행과 같음)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하면서¹⁾,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①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② 입찰공고 등 평가기준에 따라

1)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③ 그 밖에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도록 하고 있음²⁾.

개정안은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인구감소지역³⁾ 소재 산업단지 입주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의 지역균형발전에 가장 효과적인 내용으로 입찰한 자’를 추가함으로써 기업의 지방이전 등을 유도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다만, 계약이행능력이 아닌 지역균형발전을 낙찰자 결정 기준으로 하는 것이 계약 수행에 가장 적합한 상대방을 선정하려는 현행 「국가계약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우선 논의할 필요가 있음.

현행 「국가계약법」은 계약 체결 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⁴⁾,

2)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②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그 밖에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3)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관련 특별법」 제2조 제12호)’으로, 현재 89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4)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

현행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기준 또한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 입찰 가격,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개정안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할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입찰에서 유리해지는 등, 지역균형발전 외의 다른 가치들이 상대적으로 열위에 놓이게 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재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지역제한경쟁입찰⁵⁾ 등의 제도를 운영 중이라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겠음.

재정경제부는 「국가계약법」은 국가 재정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법으로서 경쟁성과 투명성 보장이 핵심이므로, 지역

사절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5)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제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6. 추정가격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②영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한다):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된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10억원

2.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경우에는 고시금액

균형발전 기여도를 낙찰자 결정 기준으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법 성격에 부합하지 않으며 다른 사회적 가치와의 형평성에 위배되고,

인구감소지역 소재 산업단지 입주 여부 등은 국외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경우 WTO 국제조달협정(GPA) 위반 소지 및 통상마찰의 우려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생략) ②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2. (생략) <u><신설></u>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2. (현행과 같음) 3. <u>인구감소지역 소재 산업단지 입주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의 지역균형발전에 가장 효과적인 내용으로 입찰한 자</u>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3. (생략) ③ · ④ (생략)	

문의처

02)6788-5160